

공 보

제638호 2018. 3. 28.(수)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44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4
거창군 조례 제2444호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10
거창군 조례 제2445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8
거창군 조례 제2446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	27
거창군 조례 제2447호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0
거창군 조례 제2448호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거창군 조례 제2449호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41
거창군 조례 제2450호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거창군 조례 제2451호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53
거창군 조례 제2452호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거창군 조례 제2453호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72
거창군 조례 제2454호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80
거창군 조례 제2455호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86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239호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95
거창군 규칙 제1240호 거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150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36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153
거창군 고시 제2018-38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54
거창군 고시 제2018-3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55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8-417호 전기사업(태양광) 양수 인가 공고 알림	157
거창군 공고 제2018-438호 2018년 부모모니터링단 모집공고(2차)	158
거창군 공고 제2018-442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공고	161
거창군 공고 제2018-447호 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	170
거창군 공고 제2018-452호 농어촌민박사업자 직권취소처분 사전통지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71

회 계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8년 3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44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별표 9 제2호가목·다목에 따른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의직렬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제3조 중 “영 별표 9 제7호라목”을 “영 별표 9 제8호라목”으로,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표 5로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u>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제3조(장려수당) 영 <u>별표 9 제7호라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u>별표 4</u>와 같다.</u></p>	<p>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u>별표 9 제2호가목·다목에 따른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2. <u>일반임기제공무원</u>----- ----- 3. ----- ----- 4. <u>수의직렬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u> <p>제3조(장려수당) 영 <u>별표 9 제8호라목</u>----- ----- -----<u>별표 5</u>-----</p>

[별표 4] <신 설>

수의직렬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수의직렬공무원	월 500,000원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

[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월 250,000원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2조(의료업무수당)제4호 및 별표 4
 -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월 500,000원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수의직렬공무원 1명*500천원*12개월= 연 6백만원

4. 작성자

행정과장 이화기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17
----------	---------

제출연월일	2018. 3.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인력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별표 4)
 -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하여 월 500,000원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4조, 별표 9

나. 예산조치: '18년 예산 4,500천원 확보

(1명*500천원*9개월=4,500천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개혁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12. 27.~'18. 1.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1): 의령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8년 3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444호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세무담당부서 외에 군민의 권리 구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할 때에는 세무담당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

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법 제77조제2항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규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26조에 따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3.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등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5.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6조(고충민원의 대상 및 제외) 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②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희,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세무조사 연기신청) ① 납세자는 법 제83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연기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 승인을 하는 경우 납세자가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9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담당부서장이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전 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 접수사실 통보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11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할 때 납세자 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담당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과의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13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14조(납세자권리현장 제정 및 준수)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현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세무담당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담당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이를 관리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의안 번호	2018-18
----------	---------

제출연월일	2018. 3.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8.1.1.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 위임조례 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을 정함(안 제2조~제5조)

다. 고충민원의 대상 및 제외를 정함(안 제6조)

○ 지방세관련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고충사항이 대상

라. 세무조사의 연기, 세무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 세무조사 연기신청의 경우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마. 권리보호요청 대상, 처리의 기본원칙, 처리기간, 고충민원과의 구분을 정함(안 제10조~제13조)

바. 납세자권리현장 제정 및 준수를 정함(안 제14조)

사. 제도개선 의견 및 과제관리를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8. 1. 31.~2.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제·개정현황: 제정 5개 시·군, 전부개정 9개 시·군

(7)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사례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8년 3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445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본문, 제7조, 제9조 중 “2017년”을 “2018년”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여부에도 불구하고”를 “여부와 관계없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문판매점을”을 “전문판매점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 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8조 조 제목 “기업도시”를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75조의2제1항”을 “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으로 “감면율”을 “경감률”로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 중 “추진되는”을 “추진하는”으로 한다.

제10조 조 제목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6조부터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균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1.~2. (생략)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 1.~2. (생략)
-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2018년

- 1.~2. (현행과 같음)

3. 전문판매점의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단서 삭제>

- 1.~2.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다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18년

3년간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경감률
--100분의 50-----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추진하는

2018년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 ② (생략)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삭 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 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균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균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삭 제>

<삭 제>

<삭 제>

제11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1. -----

2. -----

<삭 제>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군·구의 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의 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군·구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19
----------	---------

제출연월일	2018. 3.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군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기간 연장(안 제2조·제5조·제7조·제9조)

- (현행)2017년 12월 31일까지 ⇒ (변경)2018년 12월 31일까지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

나. 위임법령의 범위에서 감면기간 조정함(안 제5조·제7조)

-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5년 ⇒ 3년으로 변경함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다. 법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축소(안 제8조)

- 100분의 100 ⇒ 100분의 50

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추가(안 제10조)

마.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함(현행 제11조~14조, 제16조~제18조)

- 직접 사용의 의미, 감면 제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중복감면의 배제, 감면신청 등, 감면자료의 제출, 감면기한의 특례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제180조, 제183조·제18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1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55조·제75조의2·제92조의2, 제177조~제180조, 제183조·제18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12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8. 2. 14.~3.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현황

○ 개정완료(9): 김해, 밀양, 사천, 의령, 진주, 통영, 함안, 고성,
창원

(7)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8년 3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446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세조례”를 “거창군 군세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세조례</u></p> <p>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u>10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u>거창군 군세 조례</u></p> <p>제14조(납기) ----- ----- -----<u>20만원</u>----- ----- -----</p>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20
----------	---------

제출연월일	2018. 3. 5.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방세법」 개정(시행 '18.1.1.)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 확대함(안 제14조)
 - 부과기준세액: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5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8. 2. 12.~3.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개정현황(입법예고 9)
 - 김해, 밀양, 사천, 양산, 진주, 창원, 산청, 함안, 함양
- (7)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사례 반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8년 3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447호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
2. 장애인복지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부위원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제2항 중 “아동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8조 중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두고, 간사는 군수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u>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u>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 2. 장애인복지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p>제3조(부위원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u>아동위원</u>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u>두되</u>,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p>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u>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위원</u>-----</p> <p>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u>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u>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u>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u></p> <p>제8조(간사) ----- ----- -----<u>두고</u>, 간사는 군수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p> <p><삭 제></p>
---	---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21
----------	---------

제출연월일	2018. 3.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조례로 재기재하여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 취지에 맞게 목적규정 정비함(안 제1조)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의 취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함.

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함(안 제2조)

- 근거법령을 인용하고,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자구 수정함.

다. 법령 재기재사항인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비함(안 제3조)

- 법령에 없는 부위원장 선출방법 규정: 위원 중에서 호선

라. 위원회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 바로잡음(안 제5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미리 지명한 아동위원이 대행
⇒ 위원이 대행

마.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함(안 제5조의2)

바. 수당규정 삭제함(현행 제10조)

-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근거: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8. 1. 24.~2.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정비현황(제3조 자치법규 정비과제 중심으로)

○ 미정비(3):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7)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사례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8년 3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448호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법령”을 “조례”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적용범위)</u>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u>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에만 한정한다.</u></p>	<p><u>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u> ----- ----- ----- <u>조례</u>----- -----<단서 삭제></p>
<p><u>제6조(우선계약) ①</u> 기관장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르고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p> <p><u>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관리·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기관장이 결정한다.</u></p>	<p><u>제6조(우선계약)</u> ----- ----- ----- ----- ----- ----- ----- ----- ----- ----- <u><삭 제></u></p>
<p><u>제7조(계약자의 의무)</u>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u><삭 제></u></p>
<p><u>제8조(계약의 해지)</u> 기관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p> <p>1. <u>제7조를 위반한 경우</u> 2. <u>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를 게을리한</u></p>	<p><u><삭 제></u></p>

경우

3.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공익상 필요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폐지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22
----------	---------

제출연월일	2018. 3.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상위법령 위배 및 재기재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내 매점 면적제한 규정 삭제함(현행 제3조 단서)

○ 매점 면적제한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로 삭제

나. 계약기간 3년 규정 삭제함(현행 제6조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되어있어 법령위배

다. 계약자의 의무 규정 삭제함(현행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행관리 규정 삭제

라. 계약의 해지 규정 삭제함(현행 제8조)

○ 법령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나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 외에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로 삭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 「지방자치법」 제22조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8. 1. 24.~2. 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 완료(3): 사천, 진주, 의령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저소득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8년 3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449호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를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저소득계층에 대하여”를 “저소득주민에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험료가 월 10,4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u>저소득계층</u>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u>지원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u>저소득 계층에 대하여</u>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소득계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부과액 합산금액이 월 10,4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5. “소년소녀가장세대”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세대와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조손세대를 말한다. <p>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p>	<p>거창군 <u>저소득주민</u>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u>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u>저소득 주민에게</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험료가 월 10,4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p>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p>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 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삭 제>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23
----------	---------

제출연월일	2018. 3.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의 층이라는 의미인 “계층”이라는 용어를 순화하여 계층간 위화감 등을 해소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순화함(안 제명, 제1조~제3조)

- 저소득계층 ⇒ 저소득주민

나.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 조례에서 한 번만 나오는 용어는 정의에서 삭제하고 제3조 지원 대상에서 직접 규정함
- 보험료, 저소득주민 용어 정의 정비

다. 보험료 지원대상 정비함(안 제3조)

- 정비: 한부모세대 ⇒ 한부모가족
- 실효성 없어 삭제: 소년소녀가장세대

라. 법령위배 소지가 있는 지원 예산확보 규정 삭제함(현행 제7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 근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8. 1. 25.~2.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현황: 14개 시·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8년 3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450호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중 “입원”을 “가구원 중 입원”으로 “등으로”를 “등의 사유로”로 “미비”를 “미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이양육”을 “아이(「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양육”으로 “미비”를 “미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를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동”을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로 “전전하며”를 “ 옮겨 다니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전 제6호) 중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를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중전 제8호) 중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중전 제12호) 중 “신용회복위원회”를 “「서민이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1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2호”로 “경우”를 “경우로서 거창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거창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4항----- -----</p>
<p>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u>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u>”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u> 2. <u>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u> 3. <u>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u> 4. <u>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u> 5. <u>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u>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u>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u>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u>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u>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u>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u> 	<p>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u>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u>”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가구원 중 입원</u>----- -----<u>등의 사유로</u> -----<u>미미</u>----- 2. -----<u>아이(「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양육</u>-----<u>미미</u>----- 3. <u>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으로</u>----- ----- 4. <u>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u>----- -----<u>옮겨 다니며</u>-----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 -----<u>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u>----- ----- 6. ----- ----- ----- 7. ----- -----<u>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u>----- -----

<p>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p> <p>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이거나 공급이 제한 조치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p> <p>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p> <p>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p> <p>12. <u>신용회복위원회</u>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p> <p>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u><신 설></u></p> <p>14. 그 밖에 제1호부터 <u>제13호</u>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u><신 설></u></p>	<p>-----</p> <p>8. ----- ----- ----- -----</p> <p>9. ----- ----- ----- ----- -----</p> <p>10. ----- -----</p> <p>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u>신용회복위원회의</u> -----</p> <p>12. -----</p> <p>13. 「<u>범죄피해자 보호법</u>」에 따른 <u>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u> 14. -----<u>제12호</u>----- -----<u>경우로서 거창군수가 인정하는 경우</u></p> <p><u>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u></p>
---	---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24
----------	---------

제출연월일	2018. 3.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 맞추고, 조례로 위임된 위임 범위를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더 명확히 하는 등 이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위임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아이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
- 군복무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 신용회복위원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안 제3조)

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문장 등을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위임행정규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5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8. 1. 11.~1.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8년 3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451호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1.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 군수가 선임
2. 그 밖의 경우: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선임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
 - ② 군수는 센터장을 직접 선임할 경우 면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접은 5명 이내의 심사위원이 하되, 심사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 ①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와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의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물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의 전공·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단체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6조(자원봉사단체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원 예산은 6백만원으로 연 5천만원 이하에 해당

4.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25
----------	---------

제출연월일	2018. 3.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 취지에 맞게 규정하고,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재기재·위배, 유명무실한 조항 삭제(구 2조~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7조, 제19조) ○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사업,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경력 및 실적 인정 등, 사기진작, 실비지급 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보험가입 규정을 법령 취지에 맞게 수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18년도 예산 600만원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8. 1. 17.~2.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현황(센터 등록 및 보험지원 정비관련)

○ 개정완료(2): 통영, 함안

○ 입법예고(1): 진주

(7)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등 인

2018년 3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452호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를 “거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거창군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 제목, 제16조 제목·제1항, 제17조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7조 제목·본문, 제28조, 제30조, 제33조, 제4장 제목, 제35조, 제36조 제목·제1항·제3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를 “여성과 남성 공무원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해야 한다.”를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9조 제목 “(여성주간 행사)”를 “(양성평등주간 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을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 중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를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으로 한다.

제34조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여성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로 한다.

제5장(제37조)을 삭제한다.

제6장(제38조·제39조)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u>성평등</u> 기본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p> <p>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p>	<p>거창군 <u>양성평등</u> 기본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거창군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p>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7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정책 추진목표
 -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6. 그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제8조(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1.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과 여성단체, 여성인력 개발 관련 전문가, 성평등 정책과 관련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1조(해촉)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성평등 촉진 정책

제14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균등참여 확대) ① (생략)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직 등의 성평등 촉진) ① 군수는 성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

<삭 제>

제3장 양성평등 촉진 정책

제14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균등참여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
-----여성과 남성공무원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직 등의 양성평등 촉진) ① ---
양성평등-----

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시행하고,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해야 한다.

제17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생략)

② 군수는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1조(성평등의식 제고)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학교·사회교육, 기업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제23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 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5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

-----양성평등-----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양성평등의식 제고) -----

-----양성평등-----

제2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양성평등-----

②~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양성평등-----

③~④ (현행과 같음)

<삭제>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7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군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주요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29조(여성주간 행사) ① 군수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군수는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거창군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국제협력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

제27조(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
양성평등-----

제2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
---양성평등-----

제29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②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제30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양성평등-----

<삭 제>

제32조(국제협력 지원) -----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하여야 한다.

제33조(군민참여) ① 군수는 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4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4장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

제35조(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군수는 군 전반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성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수립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군수는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장 성평등기금

제37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규정에 같음한다.

제33조(군민참여) ① -----양성평등-----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유공자 표창) ---양성평등---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

제4장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

제35조(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

양성평등-----

제36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
-----양성평등-----

② (현행과 같음)

③ -----양성평등-----

<삭 제>

<삭 제>

제6장 보칙

<삭 제>

제3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39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26
----------	---------

제출연월일	2018. 3.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용어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조례 전반, 안 제29조)

- 성평등 ⇒ 양성평등
- 여성주간 ⇒ 양성평등주간

나. 법령위배 및 개별조례 제정·시행 중인 사항 등 삭제(현행 제2조, 제3조, 제7조~제13조, 제25조, 제31조, 제37조~제39조)

- 정의규정 삭제: 성평등, 성차별
- 군수의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수립의무 삭제: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시행계획 수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무로 규정
- 성평등정책위원회 규정 삭제: 구성·운영 실적 전무, 실효성 없음
-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규정 삭제: 「거창군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15.3.25. 제정 시행 중) 규정사항
- 성평등기금 삭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7.9.27. 제정 시행 중)
- 그 밖에 실효성 없는 규정 삭제
 -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양성평등계정에서 지원
 - 사무의 위탁, 수당 규정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12. 7.~12.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8년 3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453호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금능력이 없는 이유 등으로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

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군수가 제6조제5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제20조·제21조), 별표 7,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그 밖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확정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다른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거창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거창군수가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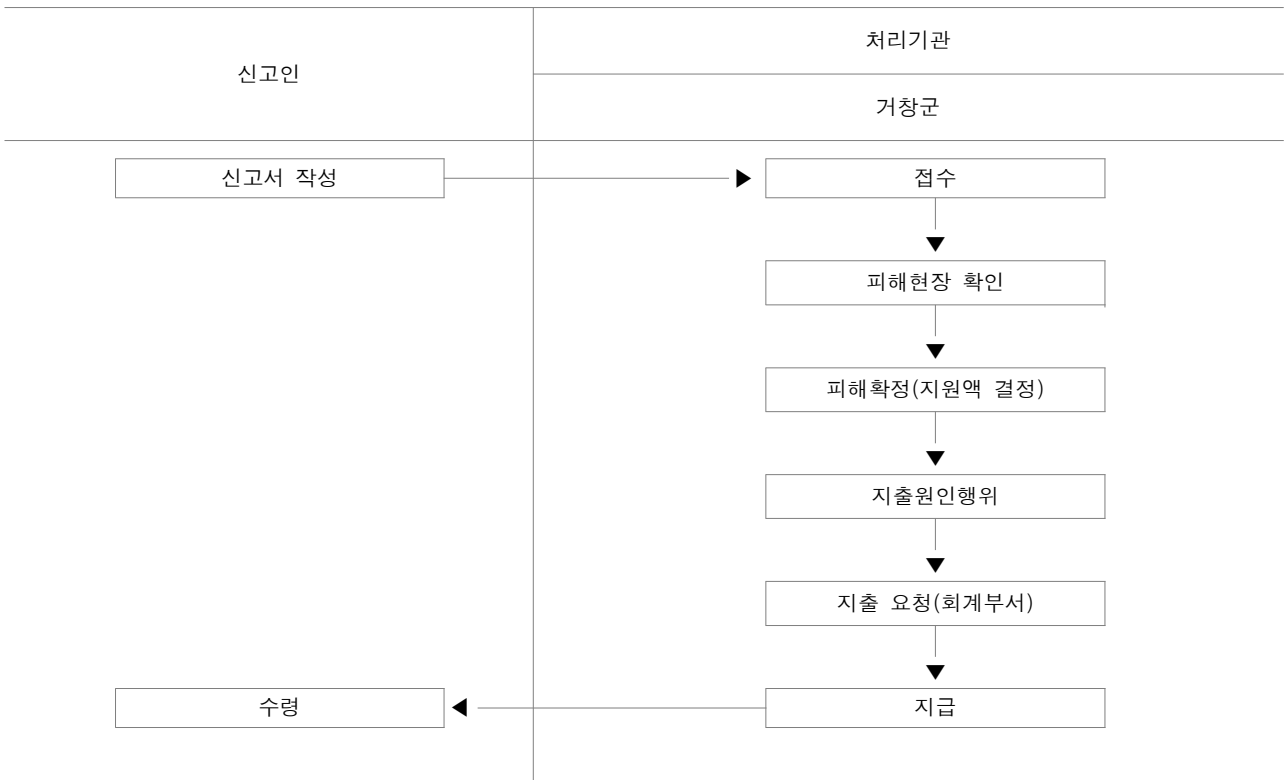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8-27
----------	---------

제출연월일	2018. 3.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의 개정(‘18. 1. 18. 시행)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정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

나. 재난피해자의 지원 결정을 규정함(안 제3조)

-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
- 경상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생활안정지원: 구호비·생계비·주거비 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 간접지원: 농어업인·임업인·소상공인 자금 융자 및 이자 감면 등
- 피해수습지원: 공공시설 복구, 피해자 수색 및 구조 등

라.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둠(안 제5조)

마.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위한 신고, 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재난피해자는 지원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신고
- 직접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지원 가능

바.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나. 예산조치: 상황발생 시 예비비 사용계획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18. 1. 4.~1. 24.

○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조례 제정 현황

○ 제정완료(2): 창녕, 통영

○ 입법예고(11): 거제, 양산, 진주, 밀양, 창원, 김해, 합천, 함안,
고성, 남해, 의령

(7) 표준안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사례 반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농어
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8년 3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454호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중 “지원”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재육성”을 “인재육성 사업”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지원”을 “육성사업”으로, 같은 항 제8호 중 “지원”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의 개수·보수 사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조사업의 지원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u>지원</u></p> <p>2.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강화 <u>지원</u></p> <p>3.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u>지원</u></p> <p>4. 농업 6차산업 활성화 <u>지원</u></p> <p>5.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u>인재 육성</u></p> <p>6.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u>지원</u></p> <p>7.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u>지원</u></p> <p>8.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u>지원</u></p> <p>9. 제3조의2에 따른 지원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p>	<p>제4조(보조사업의 지원범위) ① --- ----- -----</p> <p>1. ----- -----<u>사업</u></p> <p>2. ----- -----<u>사업</u></p> <p>3. ----- -----<u>사업</u></p> <p>4. -----<u>사업</u></p> <p>5. -----<u>인재 육성 사업</u></p> <p>6. -----<u>사업</u></p> <p>7. -----<u>육성 사업</u></p> <p>8. -----<u>지원 사업</u></p> <p>9.----- -----</p> <p>10. <u>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의 개수·보수 사업</u></p> <p>② ----- -----</p>

[별표]

농어업보조금 지원 세부사업(제4조 관련)

지원분야	세부사업 내용	지원율 (퍼센트)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사업	가축 개량·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사업	50~100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개발·판매 등의 사업	50~100
	축산물 위생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50~70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사업	50~70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한 사업	50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 보호, 생산시설·생산성 향상 및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과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업	50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	친환경·고품질·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농자재 지원 사업	50~100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시범·연구 사업	70~100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사업	70~100
원 예 농 산 물 F T A 경 쟁 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업	원예·특작 신기술보급 시범·연구 사업	50
	유망 신품종 보급사업	70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사업	50
	지역 전략작목 육성사업	50
	지역적용 및 특화가능한 작목 육성사업	50
	농업경영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	50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 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50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사업	지역대표 먹거리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각종 광고, 행사, 가격할인, 장비·포장재 지원 사업	50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메뉴, 브랜드, 컨설팅, 마케팅, 위생용품지원, 행사	50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 사업(농촌민박, 관광 농원, 휴양단지개발 등)	50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운영, 보험가입, 교육, 노후 체험시설, 마을사무장 지원 사업	100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지원 사업	100

	시설, 장비, 가공비, 포장재 등 농산물 가공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50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어업인 육성 사업	70
	수련회, 연찬회, 워크숍, 교육, 중앙 및 경남도 대회 참가 등 농업관련 단체의 활성화 사업	70~100
	농업전문인력양성(농어업인교육, 농촌여성교육, 품목별 연구회 육성)사업	100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	100
농산물 수출 진흥 및 해외 시장 개척 사업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행사, 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 개척 사업	50
	수출 촉진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50~100
	농산물 수출 물류비, 포장재 등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	100
	수출농가, 업체 등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사업	50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	농산물 공동규격출하에 따른 시설 및 운영 지원 사업	50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 시설, 장비 등 지원 사업	50~70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품질관리 및 포장재, 마케팅 지원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 사업	50~100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생산 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사업	100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	100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0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의 개수·보수 사업	거창군 농업인회관 개수·보수 사업	100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조(목적)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어업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거창군 농업인회관 유지보수비 3천만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28
----------	---------

제출연월일	2018. 3.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에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거창군 농업인 회관에 대한 개수·보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농업인회관 개수·보수비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1항 제10호, 별표)
 - 지원율: 100퍼센트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18년 예산 3천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예산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8. 1. 22.~2. 12.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8년 3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455호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역”을 “거창군”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를 “20세 이상 60세 이하”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귀농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인 귀농세대일 경우 250만원 이내 지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를 제1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제2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20조제2항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제3호·제4호·제5호로 한다.

제3조(적용례) 제15조제3항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전입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4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통한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귀농인”이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말한다.</p> <p>3. “귀농세대”란 세대주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귀농인으로서 2명 이상의 세대구성원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원사업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세대를 말한다.</p> <p>4. (생략)</p> <p>제4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제1조(목적) -----<u>거창군</u>-----</p> <p>-----</p> <p>-----</p> <p>-----</p> <p>-----</p> <p>-----</p> <p>-----</p> <p>-----</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p> <p>2년-----</p> <p>-----</p> <p>-----</p> <p>-----</p> <p>3. -----</p> <p>-----<u>20세 이상 60세 이하</u>-----</p> <p>-----</p> <p>-----</p> <p>-----</p> <p>4.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3. 농업인단체의 대표 4. 성공적인 정착을 한 귀농인 5. 그 밖에 귀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p>③ 위원은 귀농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p>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9조(회의) ① -----</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③ -----</p>
<p>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15조(귀농인·귀농인단체 지원사업)</p> <p>①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농인의 농업전문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 	<p>제15조(귀농인·귀농인단체 지원사업)</p> <p>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현 행	개 정 안
<p>계의 구축</p> <p>2.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이내의 영농정착금 지원.<단서 신설></p> <p>3.~9. (생략)</p> <p>② (생략)</p> <p><u>제16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u></p> <p>①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결정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p> <p>1.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p> <p>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p> <p>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p> <p>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사전협의 없이 축소한 경우</p> <p>5. 그 밖에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u>제17조(사후관리)</u>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p>	<p>-----</p> <p>2. ----- -----<u>다만, 1인 귀농세대일 경우 250만원 이내 지원</u></p> <p>3.~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6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u></p> <p>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운영 상황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u></p> <p><u>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사업의 신청, 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u></p> <p><u>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삭 제></u></p> <p><u>제16조(시행규칙) -----</u> -----</p>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1인 귀농세대 지원(제15조제1항제2호)
 - 1인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250만원 이내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출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400	400	400	400	400	2,000
	계	400	400	400	400	400	2,000

※ 산출기초: 귀농세대 80명(추정) × 500만원 = 400백만원 (* 1인 귀농세대 포함)

3. 관련 의견

-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귀농 유치 활성화를 도모
-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하고자 함.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영 학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29
----------	---------

제출연월일	2018. 3.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귀농정책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귀농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귀농인 지원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 삭제하여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귀농 및 귀농세대 지원기준 완화함(안 제3조제2호·제3호)

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함.(현행 제4조)

라. 위원회의 구성을 현행화 함.(안 제6조)

마. 위원회의 회의소집을 보완함.(안 제9조제2항)

바. 위원회 수당 규정 삭제함(현행 제12조)

-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근거: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사. 1인 귀농세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1항제2호 단서)

- 1인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250만원 이내

아.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등 삭제함(현행 제16조~제18조)

- 지방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규정, 사후관리, 준용
- 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 제19조

자. 귀농인·귀농단체 지원사업 중 인구증가 지원사업과 중복 규정사항 정비함(안 부칙)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중 귀농관련 규정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5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나. 예산 조치: '18년도 예산 4억 확보(영농정착금)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8. 1. 10.~1.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업 없음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8년 3월 28일

거창군 규칙 제1239호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수집할 수 있음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하였거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고충민원 처리기간)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간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간,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세무담당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담당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고충민원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신청 내용과 세무담당부서의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담당부서 등의 직원, 납세자, 관련인 등에게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 열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증명자료의 수집)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에게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다만,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여부 및 처리사유 등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의견청취)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 연기신청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및 의견청취) ① 세무담당부서의 장이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보호요청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할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수집할 수 있음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20호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권리보호요청을 직접 접수하였거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3조 단서에 따라 부득이하게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세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여부 및 처리사유 등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 하기 위하여 세무담당부서의 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지방세관계법 등에 위반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1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담당부서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 착수 연기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 ⑤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관계법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4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 ⑧ 제4항·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연기 또는 일시 중지된 경우 그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18조(징수유예 등)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징수유예 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기한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에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1.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의 기한 연장신청(이하 “기한연장 신청”이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 2.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 연장 신청(이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연장 신청이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37호서식
2. 납부기한 연장 신청: 별지 제38호서식
- ③ 납세자보호관이 기한연장 승인이나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연장 승인이나 납부기한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한연장 신청: 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납부기한 연장 신청: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제20조(가산세 감면 등)** ①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 접수사실을 통지 받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 감면 등의 처리 결과(승인여부)를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①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같은 법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담당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고충민원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 별지 제5호서식(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 별지 제6호서식(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 별지 제7호서식(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 별지 제8호서식(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 별지 제9호서식(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 별지 제10호서식(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 별지 제11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
- 별지 제12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 별지 제13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지)
- 별지 제14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 별지 제15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 별지 제15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
- 별지 제16호서식(세무조사기간 연장 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 별지 제18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 별지 제19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 통지)
- 별지 제20호서식(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
- 별지 제22호서식(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 별지 제23호서식(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 별지 제24호서식(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 별지 제25호서식(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 별지 제26호서식(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
- 별지 제27호서식(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 별지 제28호서식(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 별지 제29호서식(세무조사 착수연기 요청)
- 별지 제30호서식(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 별지 제31호서식(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 접수 통보)
- 별지 제32호서식(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 별지 제33호서식(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결정 통보)
- 별지 제34호서식(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별지 제35호서식(지방세 기한연장 접수 통보)
- 별지 제36호서식(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 별지 제37호서식(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 별지 제38호서식(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 별지 제39호서식(지방세(납부) 기한연장 여부 통지)
- 별지 제40호서식(지방세(납부)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별지 제41호서식(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 접수 통보)
- 별지 제42호서식(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별지 제43호서식(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보)
- 별지 제44호서식(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조치결과 통보)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서**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처리기간		처리에정기간
기간연장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고충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고 충 내 용				

붙임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처리일자	. . .
고충내용 (요약)				
00과 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직권시정 하였을 경우)			

붙임 고충민원서류 사본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아래 납세자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귀 부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신청일자	. . .
고 충 내 용				
요 구 자 료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제8조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발 신 명 외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내용				
시정요구 내용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민원 내용		
의결 내용		
시정요구 내용		

붙임 의결서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고충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접 수 사 항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연기신청 기간				
○○과 의견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지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결정 사항	연기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결정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처리결과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조사대상 세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연장신청 사유	※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 연장신청 사유를 기재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세무조사기간 연장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 계
	주소	전화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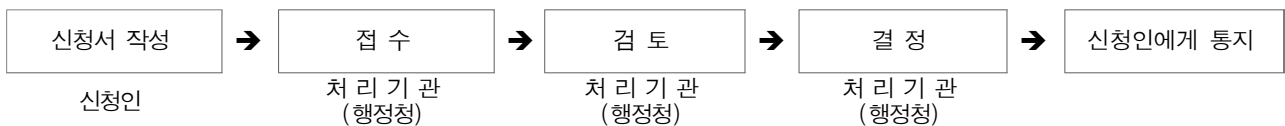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 연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붙임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장 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검토의견	연장 여부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 통지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결정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	--------	--------	--------	--------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 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권리보호요청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기 간 연 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대하여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시정요구 내용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어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내용				
○○과 검토의견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필요한 자료 명세	1 조사대상세목	
	2 조사대상기간	
	3 조 사 사 유	
	4 기 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착수연기 요청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세무조사 착수연기를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년도	
조사반			조사유형	
세무조사 착수연기 요청사유				
세무조사 착수연기 기간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년도	
조사반			조사유형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사유				
세무조사 중지기간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 징수유예등 신청 접수 통보
 [] 체납처분유예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신청 내용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2회						
	3회						

붙임 신청서 사본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 목 [] 징수유예등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 체납처분유예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여부 의견		
승인(기각)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 징수유예등 결정 통보
[] 체납처분유예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일			승인여부	
유예 승인(기각) 사유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결정 금액		과세년월	세목	세액
		계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 목 [] 징수유예등 신청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체납처분유예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일			결정사항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이 결정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과세년월	세목	세액
		계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기한연장 대상			
	당초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지방세의 내용

주요세목	과세물건(대상)	납부기한	세액	신청금액
연장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승인 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 사유				
	분납기한 및 금액	횟수	주요세목	분납기한	분납금액
		1회			
2회					
3회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J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통지내역	(납부)기한연장 대상			
	당초기한			
	승인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납부)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 접수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사유 발생일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연월	세 년 월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 / 공개 구분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등의 여부 의견				
감면 등의(감면불가) 사유				
감면 등의 승인할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 등을 할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등의 여부(승인 여부)				
감면 등의(감면불가) 사유				
감면 등의 승인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조치결과 통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승인에 따른 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처리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처리연월일		년	월	일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의안 번호	2018~6
----------	--------

제출연월일	2018. 3. 5.
제 출 자	재무과장

1. 제안 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8. 1. 1. 시행)에 따라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고충민원의 접수, 처리기간, 의견조회, 결과 통지에 관한 규정(안 제2조~제8조)
- 나.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11조)
- 다. 권리보호요청 처리절차, 통보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제17조)
- 라. 징수유예 등, 기한의 연장, 가산세감면 등에 관한 규정(안 제18조~20조)
- 마. 각종 대장 및 신청서 서식 등을 규정(별지 제1호~제44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8. 1. 31.~2.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8년 3월 28일

거창군 규칙 제1240호

거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군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의무자에게 조사 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에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③ (생략)</p>	<p>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 -----15일 ----- ----- ----- -----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거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8~7
----------	--------

제출연월일	2018. 3. 5.
제 출 자	재무과장

1. 제안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83조의 개정에 따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간을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17조)
 -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8. 1. 31.~2.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농지조성(과수원 조성)
2. 사업내역

(단위: 천원)

위 치	구분	사업시행면적(m ²)		사업비 (천 원)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산157-4번지	당초	185,756	4,810	117,590	2015. 10. 19. ~ 2018. 1. 18.	거창군 거창읍 상동1길 45	오석환
	변경	183,628	4,998	39,000	2015. 10. 19. ~ 2018. 6. 30.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6길 6	김원순
						거창군 고제면 내당길 208	오승철

3. 사업효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8년 3월 22일

거 창 군 수

거창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창군관리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3. 29.

거 창 군 수

1. 거창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 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8	셋별 중학교	중학교	거창읍 중앙리 475일원	10,169	감)369	9,800	거고126호 (2016.12.15)	

○ 학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최초결정일	비고
38	셋별중학교	· 구역 변경 - 위치 : 거창읍 중앙리 475일원 - 면적 : 10,169㎡ → 9,800㎡ (감)369㎡	· 소로2-84호선에 의하여 단절되어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구역을 제척함에 따라 군계획시설(학교)을 변경함.	

2. 관계도면 : 게재생량(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3. 28.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991 등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88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991	2009-07-02	2018-03-28	거창군 가조면과 함천군 가야면을 잇는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448-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3길 23-27	2009-04-01	2018-03-28	동변길 시점으로부터 세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 도로명주소 폐지

일련 번호	폐지도로명주소	고 시 일		폐지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동8길 31-1	2009-12-28	2018-03-28	건물철거	
2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응달길 102	2009-04-01	2018-03-28	건물철거	
3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응달길 104-1	2009-04-01	2018-03-28	건물철거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3. 21.

거 창 군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3. 21. ~ 2018. 04. 10.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구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7- 112호)	발전소명	우진솔라 태양광발전소	썬라이즈1호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김 현 실	박 승 현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254, 105동 106호 (국우동, 칠곡현대아파트)	경북 경산시 경산로 21, 107동 1301호 (옥곡동, 부영조은마을)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1624, 1625, 1627 (토지위)	
	설비용량	99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7. 12. 22.	
	양수(예정)일	2018. 03. 21.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 끝.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모집공고

2018년도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하여 모니터링단에 참여하여 활동하실 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26일

거창군수

1. 운영 목적

-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2. 참여자격

① 부모

-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연속 참여 최대 2년으로 제한)

② 보육전문가 : 다음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 ※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
-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③ 보건전문가

-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포함)
-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3. 접수기간 및 장소

- 모집기간: 2018. 3. 26. ~ 3. 29. 18:00 까지(4일간)

○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 1부, 개인소개서 1부(자유양식), 주민등록등본 1부,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관련 자격증(해당자)

- 개인소개서 1부(자유양식)

- 부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참여활동 경력, 양육사항(자녀 수, 어린이집 이용 경력 등), 모니터링단 참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
- 보육·보건전문가: 관련 경력사항, 현 보육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니터링단 참여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

○ 접수방법: 방문접수

○ 통지방법: 개별통보

○ 접수처: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여성아동담당

4. 활동기간: 2018. 4 ~ 2018. 12(9개월)

※ 활동실비보상: 부모 40,000원(1개소), 보육·보건전문가 50,000원(1개소) 지급

5. 선정방법: 서류심사(필요 시 면접심사 병행)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후보자 선정하여 관리 예정

6. 신청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모집 공고 내용은 거창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단은 우리 아동들을 위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한 자발적인 활동으로 소정의 실비만 지급할 뿐 일자리 사업이 아니므로 본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복지정책과 여성아동담당(☎055-940-3154) 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 신청서

<부모□, 보육전문가□, 보건전문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해당되는 경우 기재	전 화	사무실 : (교)			
			자택 (H)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018. . .

신청인 : (서명)

거창군수 귀하

붙임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행정기관 등 공적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베짖이 사랑방 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거창군수

1. 지정 연월일 : 2018. 3. 26.

2.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명칭 · 위치 및 규모

- 명 칭 : 월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학리 · 서변리 일원
 - 체험관 : 경상남도 거창군 서변리 551-6, 552-2
- 규 모
 - 체험시설 연면적 897.79m²(민박, 체험, 편의시설 등)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대 표 자	주 소
김 영 호	경상남도 거창군 의동 1길 85-*

4. 사업개요

- 농촌문화체험 · 휴양마을 운영을 통한 도 · 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소득 증대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5. 붙 임

- 농어촌 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조건 1부.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조건

사업자는 월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시에 아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I

일반조건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법령, 지침 및 기타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관리 등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게 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거창군 관내 주민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④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특정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물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I

재산 관리

- 사업자가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은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 사업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는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신축, 증축, 개수, 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자는 시설물, 비품,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파손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이 취소가 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이 포함된 재산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지정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Ⅲ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 등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군수는 도농교류촉진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상기사유 이외에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군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IV 운영 조건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 만약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군수에게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 단, 상기의 사건·사고가 군수 또는 제3자에 의해 발생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① 체험안전보험
 - ② 화재보험
- 사업자는 보험 가입 도중, 계약해지나 계약사항 변경이 있을 시 거창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 ▶ 상기 보험을 가입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종료 시까지 계속 유지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사무용품비, 시설수선비, 보안경비, 차량비, 통신설비비, 유류비, 가스비, 체험자재비, 제세공과금(전기, 상수도, 정화조청소료등) 등]은 월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운영협의회에서 부담해야 한다.
- 사업자는 체험(방문)객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월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운영규약에 따른다.

- 사업자는 체험마을 이용객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그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기 등의 시설에 대해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자격 있는 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험비 결정과 이윤 소득분배는 마을협의회 규약으로 정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군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군수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마을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또한 군수는 사업자의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사업자는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실적관리시스템 (<http://www.rucos.kr>)시스템에 매월 익월 10일 이내에 사업실적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준수사항
1. 소방 시설 설치 기준	가. 폐 교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추는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추는 것 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는 것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추는 것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를 갖추는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는 것 7)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 를 설치하고 휴대용 비상조명 을 반드시 갖추는 것
	나. 그 밖의 마을공동 시설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추는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 를 갖추는 것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 를 갖추는 것 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를 갖추는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는 것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 를 설치하고 휴대비상조명 을 반드시 갖추는 것 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를 각 1대 이상 갖추는 것
2. 안전 시설 기준	마을공동시설	○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 을 설치하고, 사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운영기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식당시설을 하는 경우)

도농교류법 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은 도농교류법에 따르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하며, 장소 및 시설은 타법의 저촉이 없어야 함

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는 것
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
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판매·가공장소는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4.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는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는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항목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 다. 위반의 정도가 대수롭지 않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5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45일	지정취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	지정취소		

별첨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조 항	과태료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	40만원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200만원
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3호	30만원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400만원
6.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8조제3항	20만원


공인 폐기 · 등록 공 고

「거창군 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27.

거 창 군 수

1. 등록사유: 단체 명칭 변경
2. 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8. 3. 28.
3.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거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2.4cm × 2.4cm	

4.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2.4cm × 2.4cm	
거창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출납원인	1.8cm × 1.8cm	

공 시 송 달 공 고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 2호에 따라 실시한 2017년도 농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미 이수한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현지 조사 결과, 미거주 및 폐업상태인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 직권취소처분에 앞서 농어촌정비법 제118조,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3. 27. ~ 2018. 4. 11.(15일간)
2.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3. 처분내용 및 대상자 현황

농어촌민박 사업장			주소지	처분	반송사유
소재지	민박명칭	운영자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469	의상봉민박	손*자	좌동	농어촌민박사업자 직권취소	이사감

4. 의견제출

- 가. 의견 제출기간 : 2018. 4. 11(수)까지
- 나. 장 소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라.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5. 기타사항

- 위 기간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055-940-8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7일

거 창 군 수